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20 발의연월일: 2025. 5. 8.

발 의 자:정춘생·황운하·김선민

이해민 · 서왕진 · 백선희

차규근 • 신장식 • 용혜인

김준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고 있음. 또한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시 납부하는 기탁금 역시 기탁금 반환 규정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분의 10이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있음.

한편, 헌법 제116조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를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여 국민께 보다 폭 넓게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음. 또한, 선거에서 5% 이상 10% 미만의 유효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는 유권자들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정치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고 있어 정치적 다양성을 위축시키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선거비용 보전 대상과 그 금액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기탁금 반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다당제 발전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을 위한 기촉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비용 보전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음.

또한,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저조한 사회 현상을 고려할 때 현행 기탁금 반환 특례 대상에 여성을 추가하여 청년, 장애인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비용 보전과 기탁금 반환 규정에 득표율 5% 이상 10% 미만을 비용 보전 구간에 추가하고, 10~15% 구간은 50% 보전에서 70% 보전으로 상향하고, 기탁금에 한정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이 10% 이상의 경우 기탁금 전액을, 득표율 5% 이상~ 10% 미만의 경우 기탁금의 70%를 반환하도록 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개방성을 제고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한 정치 참여 기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각각 "후보자가 여성,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0"을 "70"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2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50에"를 "70에"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 0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57條(寄託金의 반환 등) ① 관	第57條(寄託金의 반환 등) ①
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	
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	
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	1
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	
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	가
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	
의 100분의 15 이상(<u>후보</u>	<u></u> 亭보
<u>자가 「장애인복지법」 제</u>	<u>자가 여성, 「장애인복지</u>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	법」 제32조
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	
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	
상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	
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u>후보자가 「장애</u>	<u>후</u> 보자가 여성,
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 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 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 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 만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 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u><신</u>설>

<u>다</u>. (생략) 2. (생략)

② ~ ⑤ (생 략)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지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정치자금법」제40조(회계보

<u>70</u>
다.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u>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u>
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u>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u>
당하는 금액
 라. (현행 다목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 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 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 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 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 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 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 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 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생 략)
 -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 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 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의 100분의 <u>50에</u> 해당하는 금액

<신 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Π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4																					
Ι.															_	_	_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	-	-	_			-
		_			_	_	_	-	_	_	_	_	_	_	_	_	-	_			-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 –
					_	_	_	_	_	_	_	_		_	_	_	_	_			-
	 	 L		 덢	_ _ ਨੋ	- -	_ - 리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기		(ਰੋ	- - 현	_ _ ਨ੍ਹੋ	-	_ - 괴	_	- - 7	_ -	_ 	<u>-</u>			_	_		_	_		_
			(र									<u> </u>	 		_	_	_	_	_		_
	 기 니		(7		_ _)					_			_
)))) 					_	_		_
			 (†) () () () () () () () () () () () () ())					_	_		_
			 (ऍ										-) 								-
			(((<u>-</u>) 								-
			 (c) 								-
			(c									- () () () () () () () () () () 								-
			(c)				_ 				- -
			(ā) 		_ _		_ _				
) () () () () () () () () () () 						 		
			(ā									——————————————————————————————————————									-
			(ā) 						 		- -
		- - -	 																		
		- - -	 																 		
		- - -	(c																		
		- - -	 																		
		- - -	 																		
		- - -	 																		
	니	- - -								 - - <u>7</u>	- - 0	- - 어	 - <u>-</u>								
	니	- - -	 					 - ·		 - - <u>7</u>	- - 0	- - 어	 - <u>-</u>								
	니	- - - -					·	0		 - 7	_ _ 0	- 어			<u></u>	フ	<u> </u>		Ť) [_	<u>ਨ</u>
	니	- - - -					·	0		 - 7	_ _ 0	- 어			<u></u>	フ	<u> </u>		Ť) [_	<u>ਨ</u>
	니	- - - -					·	0		 - 7	_ _ 0	- 어			<u></u>	フ	<u> </u>		Ť) [_	<u>ਨ</u>
	니				上 之		 - - - -	0	 - - 의	7	- - 0	- - 어		ノ. - 上世	У <u>Г</u>	기 의	}-		<u>-</u>) [-	호 <u>.</u> 기

	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